

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

제정 2013. 7. 1. 개정 2015. 3. 31.
개정 2016. 1. 6. 개정 2016. 6. 23.
개정 2017. 5. 23. 개정 2017. 6. 30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대경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(이하 ‘본 센터’ 라 한다)라 칭한다. <개정 2015.8.31.>

제2조(목적) 센터는 교수자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학습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수 학습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학의 교육목표인 ‘창조적인 실무형 전문직업인 양성’ 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8.31.>

제3조(소재) 센터는 대경대학교(이하 ‘대학’ 이라 함) 내에 둔다. <개정 2015.8.31.>

제4조(사업)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5.8.31.>

- ① 교수지원 프로그램 <개정 2015.8.31., 2017.5.23.>
- ② 학습지원 프로그램 <개정 2015.8.31., 2017.5.23.>
- ③ 이러닝콘텐츠 개발 및 제작, 운영 지원 등 <개정 2015.8.31., 2017.5.23.>
- ④ 삭제 <2015.8.31.>
- ⑤ 삭제 <2015.8.31.>
- ⑥ 기타 사업
- ⑦ 강의개선을 위한 강의 촬영 및 비디오 피드백 <신설 2017.6.30.>

제 2 장 조 직

제5조(구성) ① 센터는 대학 부속기관으로서 센터장과 교수지원팀, 학습지원팀, 이러닝 제작 지원팀 등으로 구성하고 각 팀장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. <개정 2015.8.31., 2017.5.23.>

②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5.8.31.>

제6조(센터장)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5.8.31.>

제7조 본 센터의 인원 충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삭제 <2015.8.31.>

제9조(연구원 및 상담원) 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,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, 상담원

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의 전임교원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5.3.31., 2015.8.31>

③ 삭제 <2015.8.31.>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<개정 2015.8.31.>

⑤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5.8.31.>

⑥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위원회의 간사는 본 센터 직원으로 한다. <신설 2016.1.6.>

제11조 삭제 <2015.8.31.>

제 4 장 재 정

제12조(재정) 센터의 재원은 본교로부터의 정규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 <개정 2015.8.31.>

[중전 13조에서 이동 <2017.7.1.>]

제13조(예·결산) 센터의 예·결산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 예산·결산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5.8.31.>

[중전 14조에서 이동 <2017.7.1.>]

제14조(운영세칙)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5.8.31.>

[중전 15조에서 이동 <2017.7.1.>]

제15조(기자재 관리) 센터에서 대여 관리하는 교육기자재 및 장비의 관리는 본교 물품관리규정 및 센터의 내부지침에 의한다. <개정 2015.8.31.>

[중전 16조에서 이동 <2017.7.1.>]

제 5 장 운영 및 평가

제16조(운영 및 평가) 센터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① 센터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.

② 조사 항목별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센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에서 수요분석, 성과분석, 만족도 결과를 센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만족도 조사는 조사절차(조사계획, 조사도구, 조사내용, 조사목적, 결과분석, 개선과제, 결과활용)에 따라 실시한다. <신설 2017.6.30.>

[본조신설 2016.6.23.]

[중전 17조에서 이동 <2017.6.30.>]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